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 욕구증대와 환경분쟁 증가

환경오염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해 주기 위하여 설립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시평)에 접수된 분쟁조정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91년 이후 '98년말까지 총 252건의 분쟁사건이 접수되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8년도에는 62건의 분쟁사건이 접수되어전년대비 30% 정도 증가하였으며, 오염원 인별로는 전체 252건중 소음·진동분야가 183건, 73%(특히 '98년의 경우 62건중 56건으로 9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은 대기분야가 36건으로 14%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소음·진동사건이 타 분야에 비하여 많은 것은 대기·수질분야보다 오염도 검사 등의 입증방법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조정신청시 현실적으로 금전적 보상이 가능하리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각종 건설공사현장에서의 소음·진동에 대하여는 분쟁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신청인들이 남비현상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인의한도를 넘어서 무리한 주장을 한다고 판단하여 기각결정을 한 사건도 '98년의 경우, 전체 35건중 8건으로 기각률은 23%에 달하고 있다.

<편집부>

■ '98년 환경분쟁조정 현황

1. 분쟁조정사건 신청 및 처리현황

◇ 분쟁조정 사건 접수 및 처리실적

- '91년 이후 '98.12.31 현재 총 252건을 접수하여 216건을 처리하고 현재 36건 진행중
- '98년도에는 62건이 신청되어 전년대비 30% 정도 증가하였고, 전년도 이월사건 28건을 포함하여 총 90건중 54건 처리함.

* '98년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건 접수 3건 처리

<표-1> 연도별 분쟁조정사건 신청 및 처리현황

구분	계	'91-'92	'93	'94	'95	'96	'97	'98
접수	252	5	43	15	30	50	47	62
익년이월	-	-	1	13	8	12	25	28
전체건수	252	5	44	28	38	62	72	90
처리	216	4	31	20	26	37	44	54
진행중	36	-	-	-	-	-	-	36

2. 분야별 조정내용 비교

◇ 오염원인별 비교

- 총 252건의 조정신청사건중 소음·진동분야가 183건으로 73%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며, 다음으로 대기분야 36건으로 14%, 수질분야 24건으로 10%, 해양분야 9건으로 3%임.

- '98년 신청사건의 경우는 소음·진동분야가 91%를 차지함으로써 아파트신축공사나 도로건설 등 사회간접시설공사중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해소가 대부분임.

<표-2> 연도별 오염원인별 현황 (단위 : 건수)

	계	소음·진동	대기	수질	해양
계	252(100)	183(73)	36(14)	24(10)	9(3)
'91-'92	5	1	1	3	-
'93	43	21(49)	9(21)	5(12)	8(8)
'94	15	10(67)	2(13)	3(20)	-
'95	30	18(60)	4(13)	7(24)	1(3)
'96	50	41(82)	7(14)	2(4)	-
'97	47	36(77)	9(19)	2(4)	-
'98	62	56(91)	4(6)	2(3)	-

<표-3> 연도별, 오염원인별 증가현황

	'92이전	'93	'94	'95	'96	'97	'98
대기, 수질, 해양	4	22	5	12	9	11	6
소음·진동	1	21	10	18	41	36	56

◇ 피해내용별 비교

- 조정신청사건의 피해내용별 추이분석결과 총 252건중 건축물 및 정신적 피해가 133건으로

리포트-III

53%로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축산물피해 19%, 농산물 피해가 13%임.

○특히, 건축물관련피해의 경우 서울 등 도심지에서 각종 건설공사를 하면서 인근 거주민들에게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균열 및 정신적 피해를 야기함으로써 발생

〈표-4〉 연도별 오염원인별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계	건축물 및 정신적	농산물	축산물	내륙 수산물	해양 수산물	기타 재산
계	252(100)	133(53)	32(13)	49(19)	13(5)	11(4)	16(6)
'91-'92	5	2	1	1	1	-	-
'93	43	16	5	5	7	8	2
'94	15	5	3	5	1	-	1
'95	30	11	5	5	1	3	5
'96	50	36	6	5	-	-	3
'97	47	30	6	7	1	-	3
'98	62	33	6	19	2	-	2

◇ 발생지역별 비교

○조정신청사건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총 252건중 서울지역이 76건으로 전체 분쟁발생건수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경기지역이 53건으로 23%로써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지역의 비율이 53%를 점하고 있음.

〈표-5〉 연도별, 발생지역별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계	252	76	9	3	18	-	4	57
94 이전	63	14	2	2	1	-	-	14
'95	30	5	-	1	5	-	2	6
'96	50	20	4	-	1	-	1	13
'97	47	15	3	-	3	-	3	-
'98	62	22	-	-	8	-	1	12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9	16	18	15	11	5	9	1
94 이전	1	4	9	5	6	1	4	-
'95	4	2	1	3	1	-	-	-
'96	2	3	1	3	1	1	-	-
'97	1	2	1	2	1	2	4	-
'98	1	5	6	2	3	1	1	1

◇ 조정사건 결과비교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어 조정을 시작한 '92년도의 승복률은 25%였으며, '93년에는 48%로 되었으며, 매년 승복률이 상향되어 '97년 '98년에는 각각 89%, 87%로 증가되었음.

〈표-6〉 연도별 승복현황 (단위 : 건수, %)

	처리건수	증결결과			미정
		소계	승복	불복	
합계	216	200(100)	150(75)	50(25)	16
'92	4	4(100)	1(25)	3(75)	-
'93	31	31(100)	15(48)	16(52)	-
'94	20	20(100)	13(65)	7(35)	-
'95	26	26(100)	21(81)	5(19)	-
'96	37	37(100)	28(76)	9(24)	-
'97	44	44(100)	39(89)	5(11)	-
'98	54	38(100)	33(87)	5(13)	16

주) '98년 조정재정회의를 거친 35건중 기각사건은 8건으로 기각률이 23%임.

3. 문제점 및 정부대책

환경분쟁으로 인한 조정신청건수는 전년대비 20-30%로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미처리로 이월되는 사건도 매년 증가되고 있고, '99년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분쟁사건을 조정토록 되어 있어 사건의 양적 증가에 따른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오염원인별 조정신청사건은 소음·진동으로 인한 신청이 '93-'95년에는 약 60% 이하이나, '98년 91%로 소음·진동분야에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소음·진동에 의한 환경피해가 대기·수질분야보다 오염도검사(측정) 등의 입증에 쉽고 정신적 피해 주장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까지 소음·진동에 의한 환경조정신청에 대한 홍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기·수질 등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였는바, 앞으로 대기·수질사건처리시에는 반드시 언론매체에 홍보하는 등의 홍보대책이 필요하다.

'98년 조정신청사건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62건중 수도권지역에서의 신청이 42건으로 68%로, 이는 서울지역 지하철공사, 택지개발공사현장이 많아 실질적인 피해가 많은 원인도 있겠으나, 환경분쟁조정사건중 재정사건은 중앙위원회에서만 처리되고 있어 지방에서 재정사건 신청의 어려움 있다. 따라서 현재 정부는 향후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지방에서 재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사건중 간단·경미한 정신적 피해사건 등의 지방위원회로의 위임처리방안을 강구하고 있다.